

나. 분포현황

(1) 선고내역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전체사건 14건에 대한 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형	집행유예		
증 권 범 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수	1	2	3
			비율	33,3	66,7	100,0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전체	수	1	3	4
			비율	25,0	75,0	100,0
금 융 범 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알선수재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수	1	0	1
			비율	100,0	0,0	100,0
		전체	수	1	1	2
			비율	50,0	50,0	100,0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전체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수	0	1	1
			비율	0,0	100,0	100,0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수	2	2	4
			비율	50,0	50,0	100,0
		제4유형 (1억 원 이상)	수	1	1	2
			비율	50,0	50,0	100,0
		전체	수	3	4	7
			비율	42,9	57,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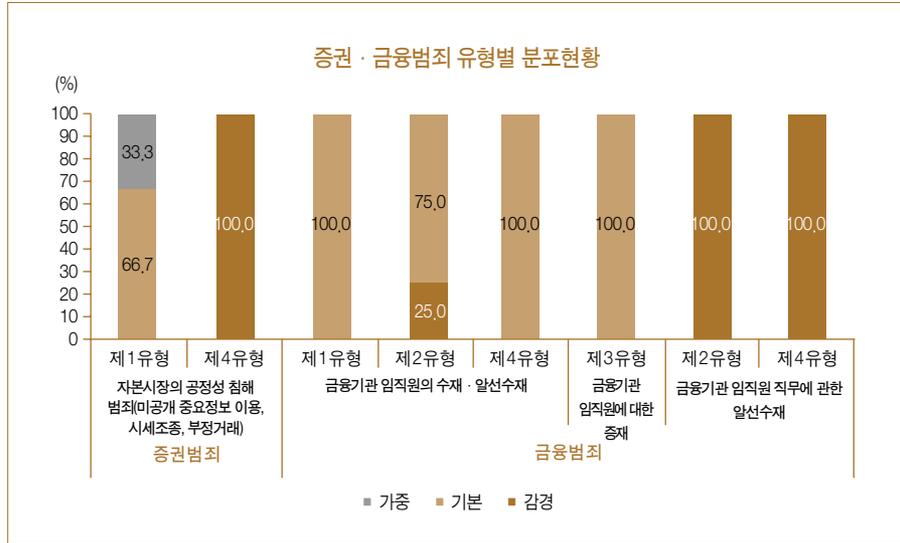
(2) 유형 및 영역구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을 유형과 영역에 따라 구분한 내용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명, %

구분	유형		양형기준 영역			전체	
			감경	기본	가중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수	0	2	1	3
			비율	0.0	66.7	33.3	100.0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수	1	0	0	1
			비율	100.0	0.0	0.0	100.0
		전체	수	1	2	1	4
			비율	25.0	50.0	25.0	100.0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알선수재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수	1	0	0	1
			비율	100.0	0.0	0.0	100.0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수	1	0	0	1
			비율	100.0	0.0	0.0	100.0
		전체	수	2	0	0	2
			비율	100.0	0.0	0.0	100.0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수	0	1	0	1
			비율	0.0	100.0	0.0	100.0
		전체	수	0	1	0	1
			비율	0.0	100.0	0.0	100.0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수	0	1	0	1
			비율	0.0	100.0	0.0	100.0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수	1	3	0	4
			비율	25.0	75.0	0.0	100.0
		제4유형 (1억 원 이상)	수	0	2	0	2
			비율	0.0	100.0	0.0	100.0
		전체	수	1	6	0	7
			비율	14.3	85.7	0.0	100.0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다.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평균형량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¹⁴⁾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2년 하반기	
			수	평균
증권 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	-	-
		기본	2	9.0
		가중	1	24.0
		합계	3	14.0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감경	1	30.0
		기본	-	-
		가중	-	-
		합계	1	30.0

14)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에는 이종경합범 사건이 없었다.

단위 :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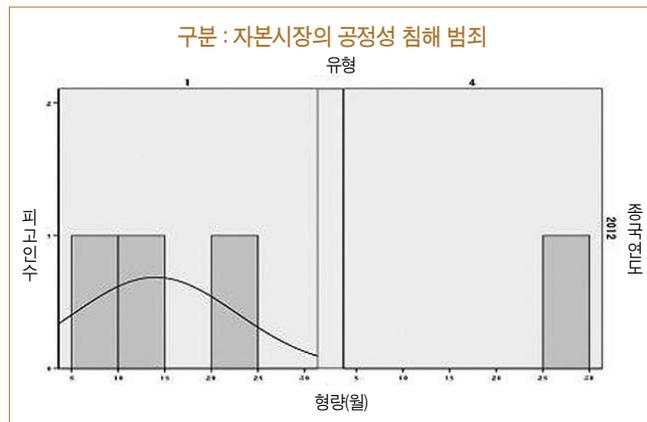
구분	유형	영역	2012년 하반기		
			수	평균	
금융 범죄	전체	감경	1	30.0	
		기본	2	9.0	
		가중	1	24.0	
		합계	4	18.0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감경	1	8.0
			기본	-	-
			가중	-	-
			합계	1	8.0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감경	1	42.0
			기본	-	-
			가중	-	-
			합계	1	42.0
	전체	감경	2	25.0	
		기본	-	-	
		가중	-	-	
		합계	2	25.0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감경	-	-	
		기본	1	18.0	
		가중	-	-	
		합계	1	18.0	
	전체	감경	-	-	
		기본	1	18.0	
		가중	-	-	
		합계	1	18.0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감경	-	-	
		기본	1	8.0	
		가중	-	-	
		합계	1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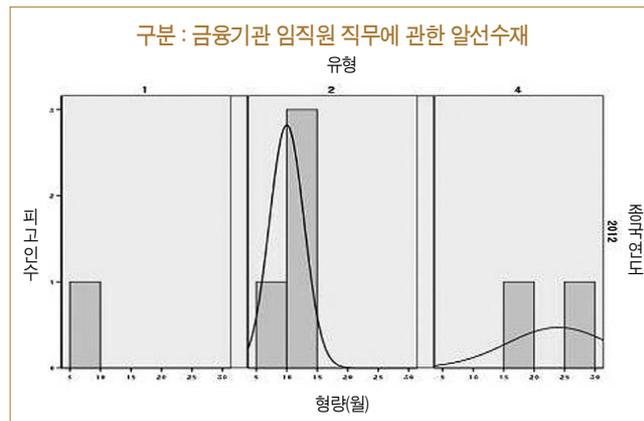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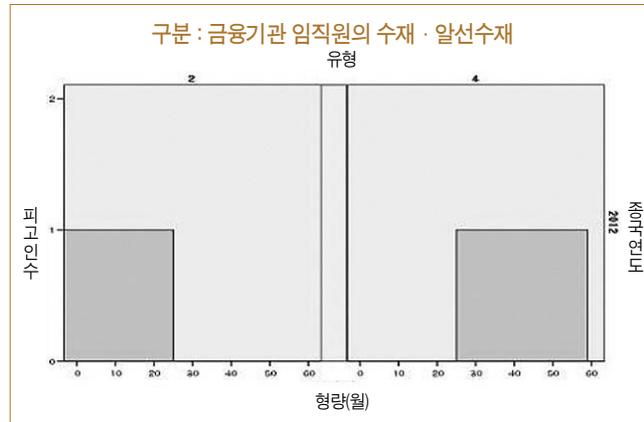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2년 하반기	
			수	평균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감경	1	6.0
		기본	3	11.3
		가중	-	-
		합계	4	10.0
	제4유형 (1억 원 이상)	감경	-	-
		기본	2	24.0
		가중	-	-
		합계	2	24.0
	전체	감경	1	6.0
		기본	6	15.0
		가중	-	-
		합계	7	13.7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20 지식재산권범죄

가. 분포현황

(1) 선고내역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전체사건 129건에 대한 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등록권리침해행위	수	27	84	111
		비율	24.3	75.7	100.0
저작권침해행위	제1유형 (저작권재산권침해)	수	0	15	15
		비율	0.0	100.0	100.0
	제2유형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수	0	3	3
		비율	0.0	100.0	100.0
	전체	수	0	18	18
		비율	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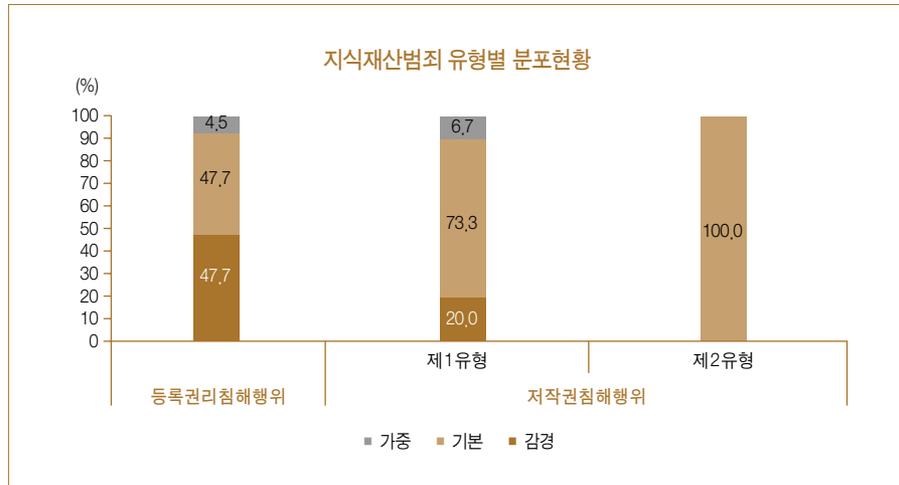
등록권리침해행위의 경우 실형 비율이 24.3%였고, 저작권침해행위의 경우는 모든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2) 유형 및 영역구분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을 유형과 영역에 따라 구분한 내용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등록권리침해행위	수	53	53	5	111
		비율	47.7	47.7	4.5	100.0
저작권침해행위	제1유형 (저작권재산권침해)	수	3	11	1	15
		비율	20.0	73.3	6.7	100.0
	제2유형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수	0	3	0	3
		비율	0.0	100.0	0.0	100.0
	전체	수	3	14	1	18
		비율	16.7	77.8	5.6	100.0



등록권리침해행위는 감경영역(47.7%) = 기본영역(47.7%) > 가중영역(4.5%) 순이고, 저작권침해행위는 기본영역(77.8%) > 감경영역(16.7%) > 가중영역(5.6%) 순이었다.

나.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평균형량

(1) 전체사건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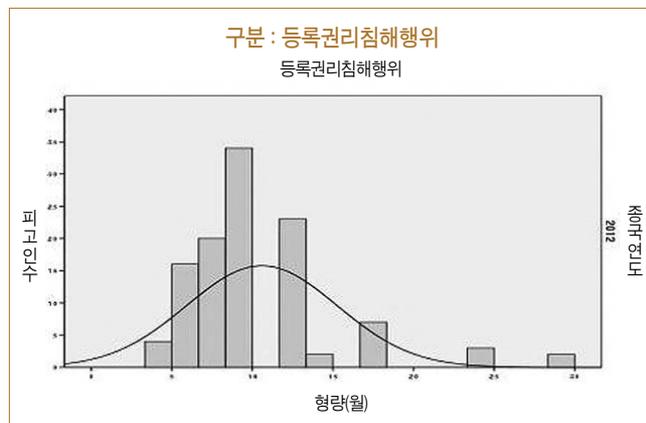
단위 :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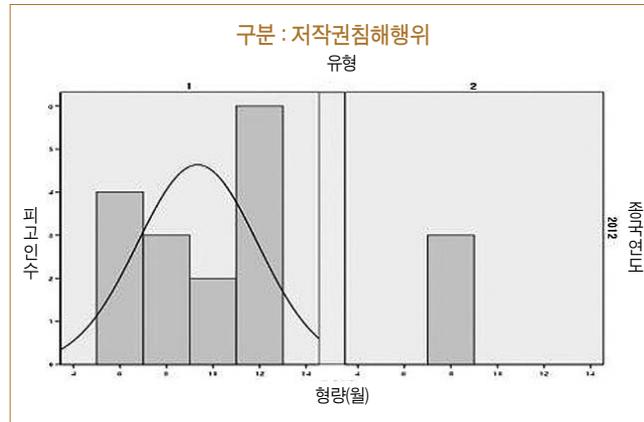
구 분	유 형	영 역	2012년 하반기	
			수	평 균
등록권리침해행위		감경	53	9.4
		기본	53	11.4
		가중	5	15.2
		합계	111	10.6
저작권침해행위	제1유형 (저작권재산권침해)	감경	3	6.0
		기본	11	10.0
		가중	1	12.0
		합계	15	9.3

단위 : 명, 월

구 분	유 형	영 역	2012년 하반기	
			수	평 균
	제2유형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감경	-	-
		기본	3	8,0
		가중	-	-
		합계	3	8,0
	전체	감경	3	6,0
		기본	14	9,6
		가중	1	12,0
		합계	18	9,1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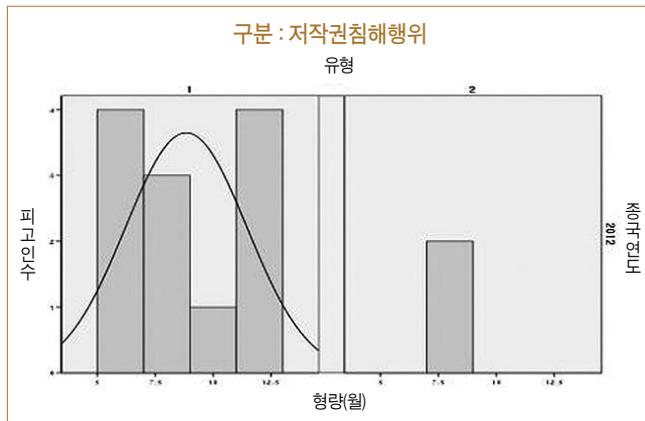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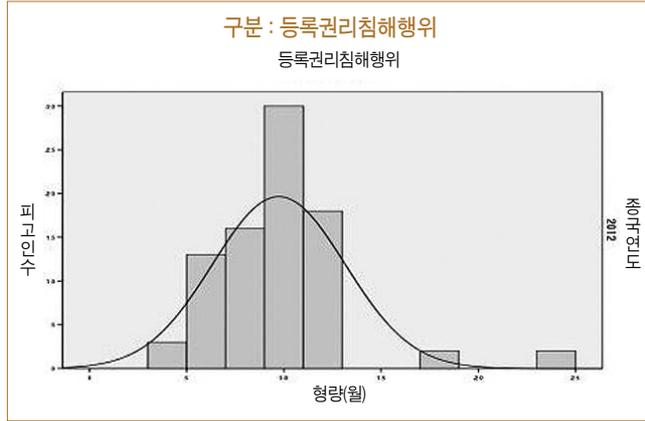
(2)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월

구 분	유 형	영 역	2012년 하반기		
			수	평 균	
등록권리침해행위		감경	42	9.2	
		기본	38	9.8	
		가중	4	14.5	
		합계	84	9.7	
저작권침해행위	제1유형 (저작권침해)	감경	3	6.0	
		기본	9	9.8	
		가중	-	-	
		합계	12	8.8	
	제2유형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감경	-	-	
		기본	2	8.0	
		가중	-	-	
		합계	2	8.0	
	전체		감경	3	6.0
			기본	11	9.5
			가중	-	-
			합계	14	8.7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21 폭력범죄

가. 분포현황

(1) 선고내역

폭력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전체사건 3,962건에 대한 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수	355	903	1,258
		비율	28,2	71,8	100,0
	제2유형 (중상해)	수	7	4	11
		비율	63,6	36,4	100,0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수	20	2	22
		비율	90,9	9,1	100,0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수	8	6	14
		비율	57,1	42,9	100,0
	전체	수	390	915	1,305
		비율	29,9	70,1	100,0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수	306	1,188	1,494
		비율	20,5	79,5	100,0
	전체	수	306	1,188	1,494
		비율	20,5	79,5	100,0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수	58	80	138
		비율	42,0	58,0	100,0
	제2유형 (폭행치상)	수	5	10	15
		비율	33,3	66,7	100,0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수	10	5	15
		비율	66,7	33,3	100,0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수	2	75	77
		비율	2,6	97,4	100,0
	제6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수	82	265	347
		비율	23,6	76,4	100,0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수	1	4	5
		비율	20,0	80,0	100,0
	전체	수	158	439	597
		비율	26,5	73,5	100,0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협박범죄	제1유형 (일반협박)	수	35	27	62
		비율	56.5	43.5	100.0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수	82	401	483
		비율	17.0	83.0	100.0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수	13	8	21
		비율	61.9	38.1	100.0
	전체	수	130	436	566
		비율	23.0	77.0	100.0

실형 비율은 일반적인 상해죄(29.9%) > 폭행범죄(26.5%) > 협박범죄(23.0%)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죄(20.5%)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실형 비율의 경우 일반적인 상해죄는 제3유형(90.0%) > 제2유형(63.6%) > 제4유형(57.1%) > 제1유형(28.2%)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경우 제2유형의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사건이 없었다.

폭행범죄는 실형의 비율이 제3유형(66.7%) > 제1유형(42.0%) > 제2유형(33.3%) > 제6유형(23.6%) > 제7유형(20.0%) > 제4유형(2.6%) 순으로 나타났다.

협박범죄는 실형의 비율이 제5유형(61.9%) > 제1유형(56.5%) > 제4유형(17.0%) 순이었다.

(2) 유형 및 영역구분

폭력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을 유형과 영역에 따라 구분한 내용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수	314	530	414	1,258
		비율	25.0	42.1	32.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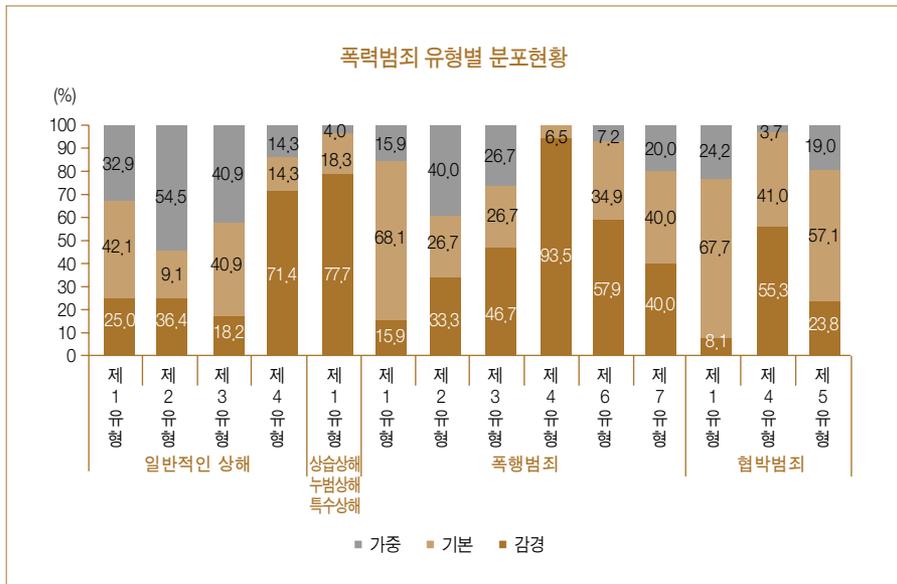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제2유형 (중상해)	수	4	1	6	11
		비율	36.4	9.1	54.5	100.0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수	4	9	9	22
		비율	18.2	40.9	40.9	100.0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수	10	2	2	14
		비율	71.4	14.3	14.3	100.0
전체	수	332	542	431	1,305	
	비율	25.4	41.5	33.0	100.0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수	1,161	273	60	1,494
		비율	77.7	18.3	4.0	100.0
	전체	수	1,161	273	60	1,494
		비율	77.7	18.3	4.0	100.0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수	22	94	22	138
		비율	15.9	68.1	15.9	100.0
	제2유형 (폭행치상)	수	5	4	6	15
		비율	33.3	26.7	40.0	100.0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수	7	4	4	15
		비율	46.7	26.7	26.7	100.0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사)	수	72	5	0	77
		비율	93.5	6.5	0.0	100.0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수	201	121	25	347
		비율	57.9	34.9	7.2	100.0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수	2	2	1	5	
	비율	40.0	40.0	20.0	100.0	
전체	수	309	230	58	597	
	비율	51.8	38.5	9.7	100.0	
협박범죄	제1유형 (일반협박)	수	5	42	15	62
		비율	8.1	67.7	24.2	100.0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수	267	198	18	483
		비율	55,3	41,0	3,7	100,0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수	5	12	4	21
		비율	23,8	57,1	19,0	100,0
	전체	수	277	252	37	566
		비율	48,9	44,5	6,5	100,0



일반적인 상해의 경우는 기본영역(41.5%) > 가중영역(33.0%) > 감경영역(25.4%) 순이었고,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경우는 감경영역(77.7%) > 기본영역(18.3%) > 가중영역(4.0%) 순이었는데, 감경영역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이유는 전체사건 1,494건 중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 적용된 사건이 1,062건이나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폭행범죄의 경우는 감경영역(51.8%) > 기본영역(38.5%) > 가중영역(9.7%) 순

이었고, 협박범죄의 경우는 감경영역(48.9%) > 기본영역(44.5%) > 가중영역(6.5%) 순이었다.

나.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평균형량

(1) 전체사건

폭력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2년 하반기	
			수	평균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	314	8.1
		기본	530	8.0
		가중	414	9.5
		합계	1,258	8.5
	제2유형 (중상해)	감경	4	37.0
		기본	1	18.0
		가중	6	35.0
		합계	11	34.2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감경	4	33.0
		기본	9	53.3
		가중	9	72.0
		합계	22	57.3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감경	10	12.2
		기본	2	14.0
		가중	2	21.0
		합계	14	13.7
	전체	감경	332	8.9
		기본	542	8.8
		가중	431	11.2
		합계	1,305	9.6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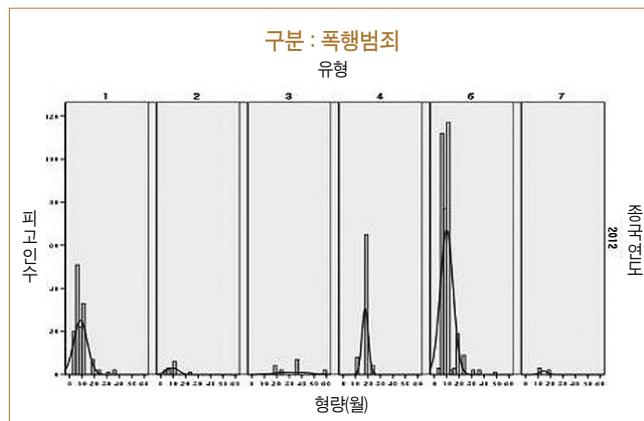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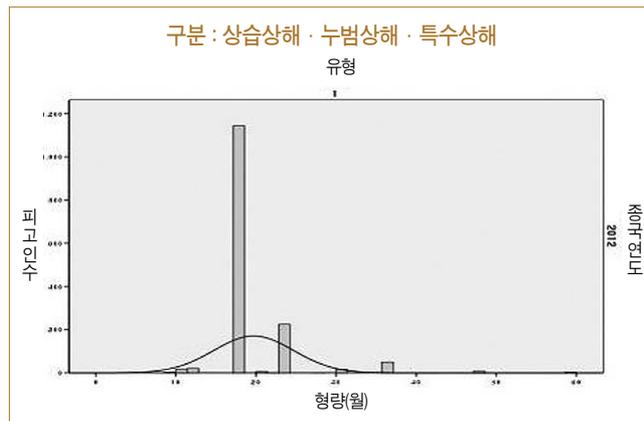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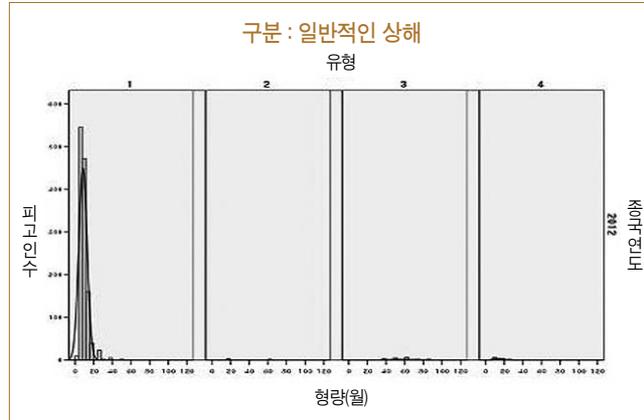
단위 :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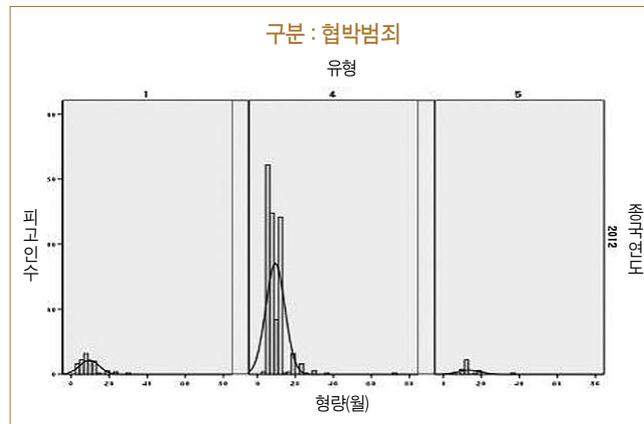
구분	유형	영역	2012년 하반기	
			수	평균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	1,161	18.7
		기본	273	21.8
		가중	60	29.9
		합계	1,494	19.7
	전체	감경	1,161	18.7
		기본	273	21.8
		가중	60	29.9
		합계	1,494	19.7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감경	22	9.2
		기본	94	8.0
		가중	22	11.5
		합계	138	8.7
	제2유형 (폭행치상)	감경	5	7.2
		기본	4	12.5
		가중	6	8.7
		합계	15	9.2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감경	7	24.0
		기본	4	33.0
		가중	4	48.0
		합계	15	32.8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사)	감경	72	17.8
		기본	5	15.6
		가중	-	-
		합계	77	17.6
	제6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감경	201	8.7
		기본	121	10.5
		가중	25	17.0
		합계	347	9.9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2년 하반기		
			수	평균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감경	2	12.0	
		기본	2	15.0	
		가중	1	18.0	
		합계	5	14.4	
	전체	감경	309	11.2	
		기본	230	10.0	
		가중	58	16.2	
		합계	597	11.2	
	협박범죄	제1유형 (일반협박)	감경	5	7.4
			기본	42	9.6
			가중	15	10.1
			합계	62	9.5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	267	8.5	
		기본	198	10.0	
		가중	18	18.7	
		합계	483	9.5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감경	5	10.4	
		기본	12	13.3	
		가중	4	18.0	
		합계	21	13.5	
전체		감경	277	8.5	
		기본	252	10.1	
		가중	37	15.1	
		합계	566	9.7	

폭력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2)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

폭력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2년 하반기	
			수	평균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	169	6.6
		기본	291	7.2
		가중	196	8.2
		합계	656	7.3
	제2유형 (중상해)	감경	4	37.0
		기본	1	18.0
		가중	6	35.0
		합계	11	34.2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감경	4	33.0
		기본	9	53.3
		가중	7	75.4
		합계	20	57.0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2년 하반기	
			수	평균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감경	3	10.0
		기본	-	-
		가중	1	24.0
		합계	4	13.5
	전체	감경	180	7.9
		기본	301	8.6
		가중	210	11.3
		합계	691	9.2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	920	18.5
		기본	200	21.3
		가중	38	28.4
		합계	1,158	19.3
	전체	감경	920	18.5
		기본	200	21.3
		가중	38	28.4
		합계	1,158	19.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감경	6	6.0
		기본	19	5.2
		가중	7	9.1
		합계	32	6.2
	제2유형 (폭행치상)	감경	3	7.3
		기본	2	8.0
		가중	4	8.5
		합계	9	8.0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감경	7	24.0
		기본	4	33.0
		가중	4	48.0
		합계	15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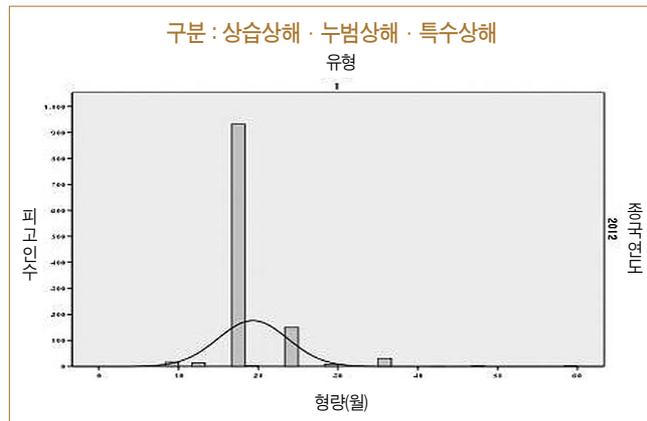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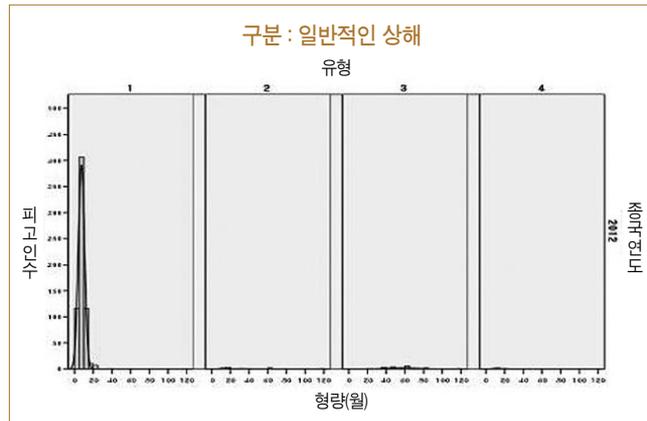
단위 :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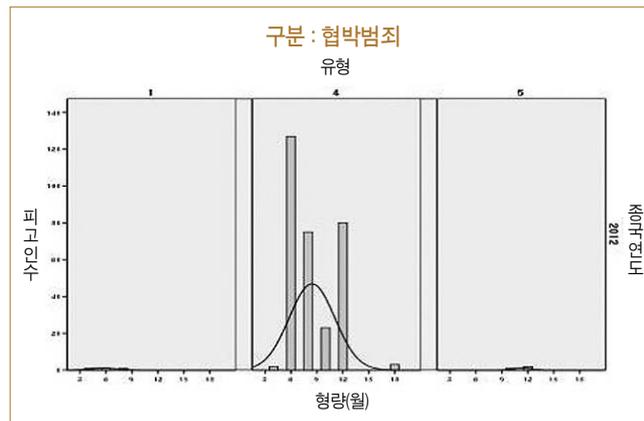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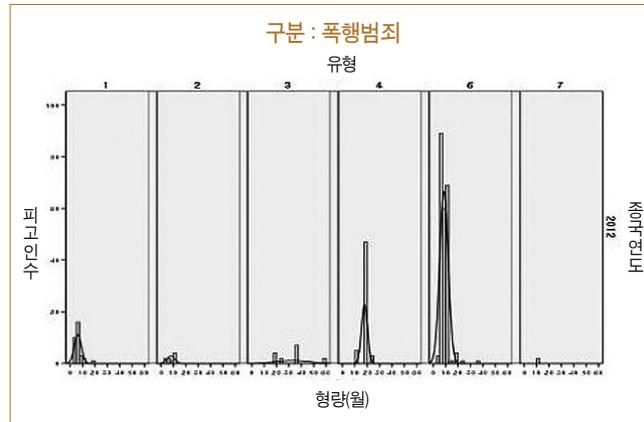
구분	유형	영역	2012년 하반기	
			수	평균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사)	감경	52	18.0
		기본	3	14.0
		가중	-	-
		합계	55	17.7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	140	8.3
		기본	82	8.6
		가중	7	16.3
		합계	229	8.6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감경	1	12.0
		기본	1	12.0
		가중	-	-
		합계	2	12.0
	전체	감경	209	11.1
		기본	111	9.0
		가중	22	18.4
		합계	342	10.9
협박범죄	제1유형 (일반협박)	감경	1	5.0
		기본	1	4.0
		가중	2	7.0
		합계	4	5.8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	179	8.2
		기본	125	8.8
		가중	6	9.7
		합계	310	8.4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감경	2	11.0
		기본	-	-
		가중	1	12.0
		합계	3	11.3

단위 : 명, 월

구분	유형	영역	2012년 하반기	
			수	평균
	전체	감경	182	8.2
		기본	126	8.7
		가중	9	9.3
		합계	317	8.4

폭력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22 교통범죄

가. 분포현황

(1) 선고내역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전체사건 3,300건에 대한 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수	131	1,465	1,596
		비율	8,2	91,8	100,0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수	51	565	616
		비율	8,3	91,7	100,0
	전체	수	182	2,030	2,212
		비율	8,2	91,8	100,0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수	89	960	1,049
		비율	8,5	91,5	100,0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수	13	26	39
		비율	33,3	66,7	100,0
	전체	수	102	986	1,088
		비율	9,4	90,6	100,0

실형 비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8.2%, 교통사고 후 도주의 경우 9.4%의 비율을 보였다. 유형별 실형 비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제1유형(8.2%)과 제2유형(8.3%)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교통사고 후 도주의 경우 제3유형(치사 후 도주)이 33.3%로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8.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유형 및 영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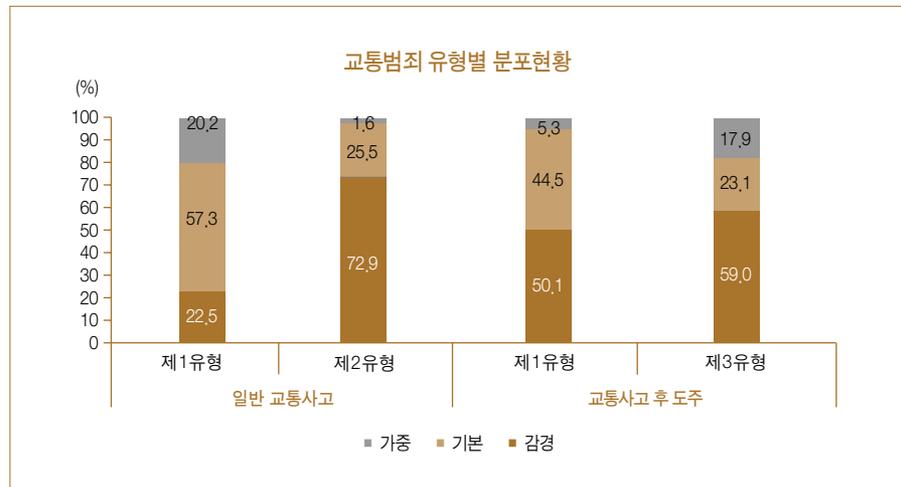
교통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을 유형과 영역에 따라 구분한 내용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수	359	915	322	1,596
		비율	22,5	57,3	20,2	100,0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수	449	157	10	616
		비율	72,9	25,5	1,6	100,0
	전체	수	808	1,072	332	2,212
		비율	36,5	48,5	15,0	100,0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수	526	467	56	1,049
		비율	50.1	44.5	5.3	100.0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수	23	9	7	39
		비율	59.0	23.1	17.9	100.0
	전체	수	549	476	63	1,088
		비율	50.5	43.8	5.8	100.0



일반 교통사고는 기본영역(48.5%) > 감경영역(36.5%) > 가중영역(15.0%) 순이었고, 교통사고 후 도주는 감경영역(50.5%) > 기본영역(43.8%) > 가중영역(5.8%)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제1유형은 기본영역(57.3%), 제2유형은 감경영역(72.9%)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사고 후 도주의 경우 제1유형과 제3유형 모두 감경영역의 비율이 50.1%와 59.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나.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평균형량

(1) 전체사건

교통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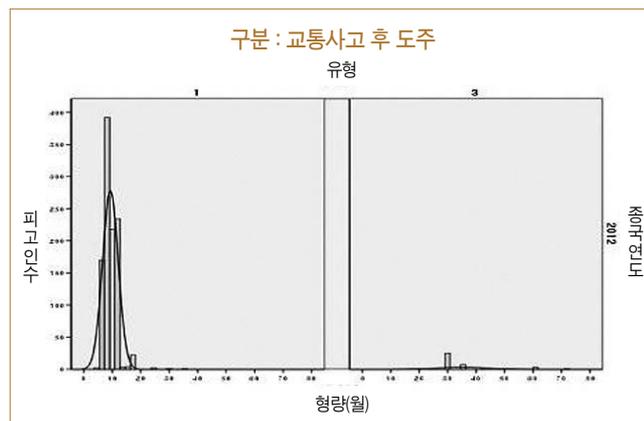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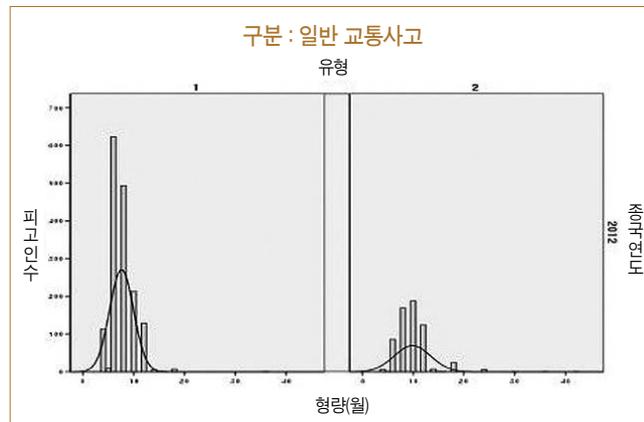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월

구 분	유 형	영 역	2012년 하반기	
			수	평 균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	359	6.3
		기본	915	7.5
		가중	322	9.3
		합계	1,596	7.6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	449	8.9
		기본	157	12.1
		가중	10	16.2
		합계	616	9.9
	전체	감경	808	7.8
		기본	1,072	8.2
		가중	332	9.5
		합계	2,212	8.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감경	526	8.4
		기본	467	10.0
		가중	56	11.8
		합계	1,049	9.3
	제3유형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감경	23	30.5
		기본	9	32.0
		가중	7	54.0
		합계	39	35.1
	전체	감경	549	9.3
		기본	476	10.4
		가중	63	16.4
		합계	1,088	10.2

교통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2)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

교통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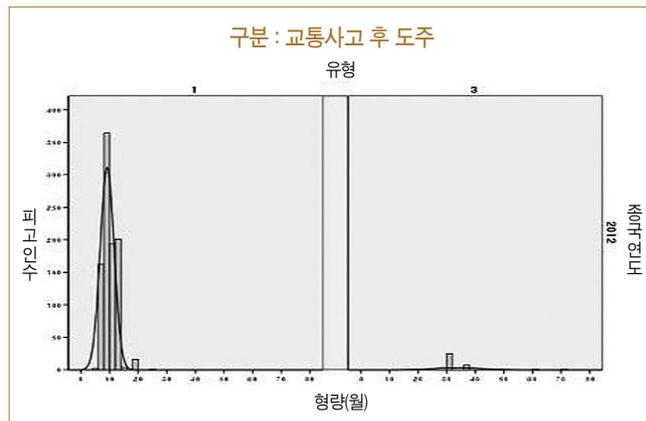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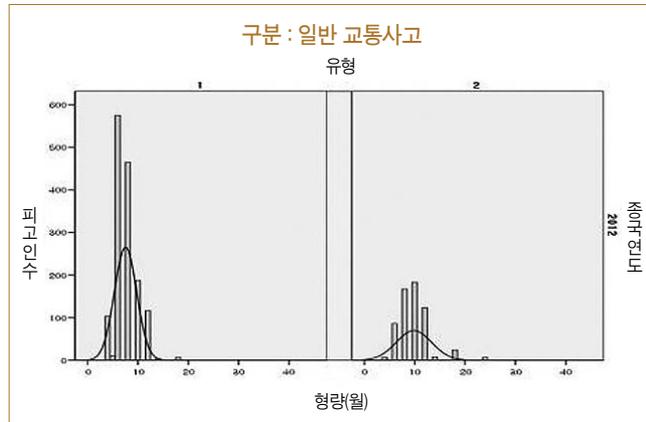
구 분	유 형	영 역	2012년 하반기	
			수	평 균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	320	6.2
		기본	852	7.5
		가중	294	9.2
		합계	1,466	7.5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 명, 월

구 분	유 형	영 역	2012년 하반기	
			수	평 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	443	8.9
		기본	155	12.0
		가중	9	17.1
		합계	607	9.8
	전체	감경	763	7.8
		기본	1,007	8.2
		가중	303	9.4
		합계	2,073	8.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감경	467	8.1
		기본	425	10.0
		가중	52	11.5
		합계	944	9.1
	제3유형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감경	22	30.8
		기본	9	32.0
		가중	4	54.0
		합계	35	33.8
	전체	감경	489	9.1
		기본	434	10.4
		가중	56	14.5
		합계	979	10.0

교통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23 선거범죄

가. 개관

선거범죄 양형기준은 2012. 9. 1. 시행되었다.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특징은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달리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선거범죄의 경우 징역형의 형량과 벌금형의 액수가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¹⁵⁾ 아래의 통계분석 결과는 벌금형까지 포함한 것

15)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선거관 계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상

으로서, 세부적인 통계분석의 경우 다른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와 달리 형량뿐만 아니라 벌금액에 대한 통계분석도 시행하였다.

나. 분포현황

(1) 선고내역

선거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 전체사건 227건에 대한 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벌금형	
매수 및 이해유도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수	0	1	5	6
		비율	0.0	16.7	83.3	100.0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수	5	20	53	78
		비율	6.4	25.6	67.9	100.0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수	1	1	5	7
		비율	14.3	14.3	71.4	100.0
전체		수	6	22	63	91
		비율	6.6	24.2	69.2	100.0
기부행위금지 · 제한위반		수	0	7	34	41
		비율	0.0	17.1	82.9	100.0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1유형 (후보자비방)	수	0	0	14	14
		비율	0.0	0.0	100.0	100.0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수	0	0	4	4
		비율	0.0	0.0	100.0	100.0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수	1	1	10	12
		비율	8.3	8.3	83.3	100.0
전체		수	1	1	28	30
		비율	3.3	3.3	93.3	100.0

선거범죄로 인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매수 및 이해유도범죄, 기부행위를 한 죄)에 당선무효가 된다.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선고내역			전 체
			실 형	집행유예	벌금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수	0	0	18	18
		비율	0.0	0.0	100.0	100.0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수	0	3	44	47
		비율	0.0	6.4	93.6	100.0
	전체	수	0	3	62	65
		비율	0.0	4.6	95.4	100.0

벌금형 비율의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69.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은 82.9%,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은 93.3%,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은 95.4%로 나타났다. 실형 비율의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6.6%)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3.3%) 순이었으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과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의 경우는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없었다.

(2) 유형 및 영역구분

선거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을 유형과 영역에 따라 구분한 내용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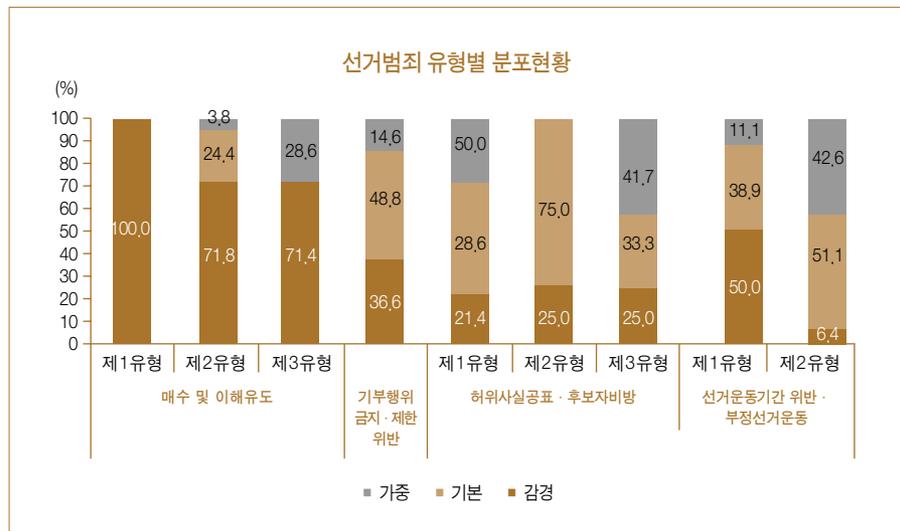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매수 및 이해유도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수	6	0	0	6
		비율	100.0	0.0	0.0	100.0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수	56	19	3	78
		비율	71.8	24.4	3.8	100.0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수	5	0	2	7
		비율	71.4	0.0	28.6	100.0
	전체	수	67	19	5	91
		비율	73.6	20.9	5.5	100.0

2012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단위: 명, %

구 분	유 형		양형기준 영역			전 체	
			감 경	기 본	가 중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수	15	20	6	41	
		비율	36,6	48,8	14,6	100,0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1유형 (후보자비방)	수	3	4	7	14	
		비율	21,4	28,6	50,0	100,0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수	1	3	0	4	
		비율	25,0	75,0	0,0	100,0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수	3	4	5	12	
		비율	25,0	33,3	41,7	100,0	
전체		수	7	11	12	30	
		비율	23,3	36,7	40,0	100,0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수	9	7	2	18	
		비율	50,0	38,9	11,1	100,0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수	3	24	20	47	
		비율	6,4	51,1	42,6	100,0	
	전체		수	12	31	22	65
			비율	18,5	47,7	33,8	100,0



매수 및 이해유도는 감경영역(73.6%)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기부행위 금지·제한위반은 기본영역(48.8%) > 감경영역(36.6%) > 가중영역(14.6%) 순이었다.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는 가중영역(40.0%) > 기본영역(36.7%) > 감경영역(23.3%) 순이었으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은 기본영역(47.7%) > 가중영역(33.8%) > 감경영역(18.5%) 순으로 나타났다.

다.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평균형량

양형기준 시행 이후인 2012. 9.부터 2012. 12.까지의 평균형량 및 평균벌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징역형 사건

(가) 전체사건

선거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유형 및 영역별 징역형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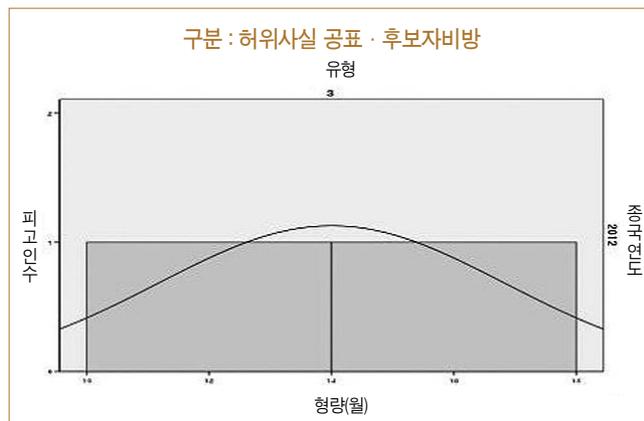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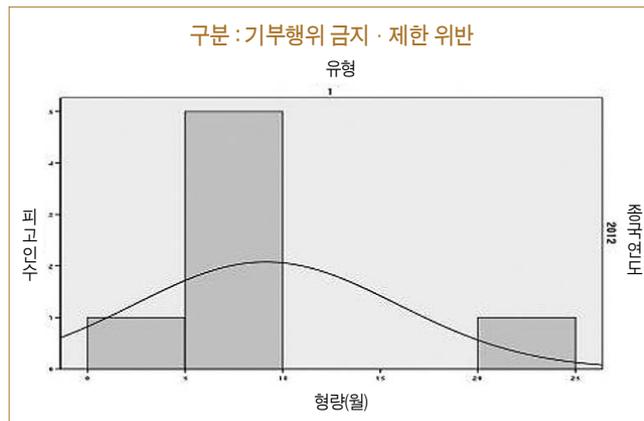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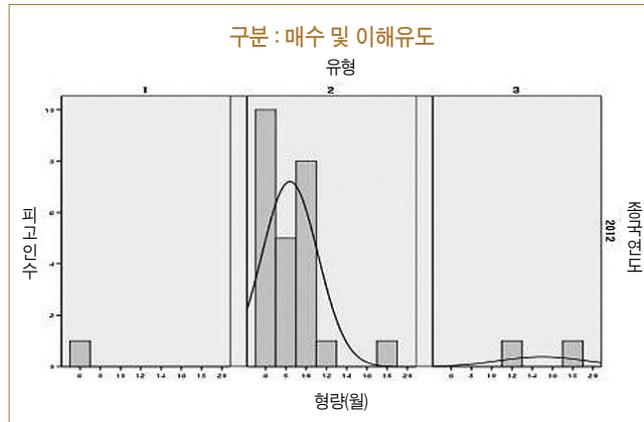
단위: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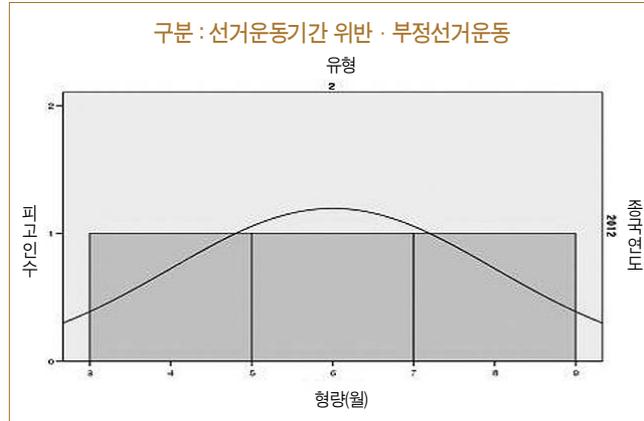
구 분	유 형	영 역	2012년 9월 ~ 12월	
			수	평 균
매수 및 이해유도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감경	1	6.0
		기본	-	-
		가중	-	-
		합계	1	6.0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감경	4	7.5
		기본	18	7.8
		가중	3	13.3
		합계	25	8.4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감경	-	-
		기본	-	-
		가중	2	15.0
		합계	2	15.0

단위 : 명, 월

구 분	유 형	영 역	2012년 9월 ~ 12월	
			수	평 균
	전체	감경	5	7.2
		기본	18	7.8
		가중	5	14.0
		합계	28	8.8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감경	-	-
		기본	2	5.0
		가중	5	10.8
		합계	7	9.1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감경	-	-
		기본	-	-
		가중	2	14.0
		합계	2	14.0
	전체	감경	-	-
		기본	-	-
		가중	2	14.0
		합계	2	14.0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감경	-	-
		기본	-	-
		가중	3	6.0
		합계	3	6.0
	전체	감경	-	-
		기본	-	-
		가중	3	6.0
		합계	3	6.0

선거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징역형 선고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나)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

선거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유형 및 영역별 징역형 평균형량은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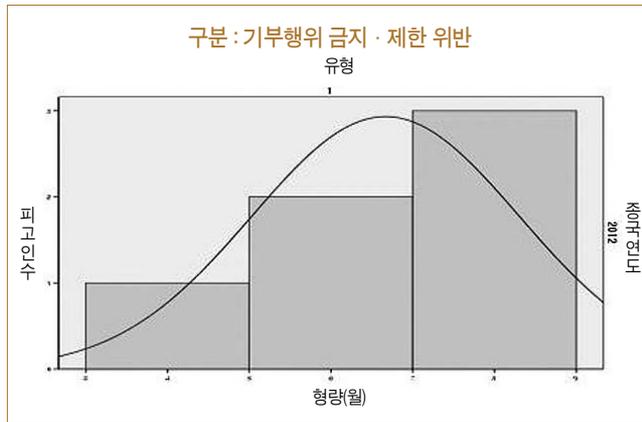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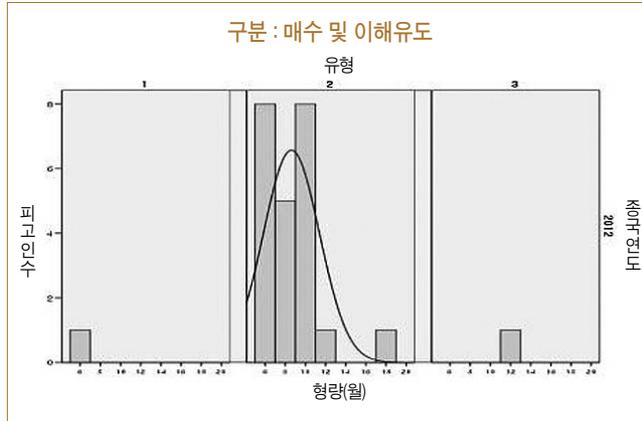
단위 : 명, 월

구 분	유 형	영 역	2012년 9월 ~ 12월	
			수	평 균
매수 및 이해유도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감경	1	6.0
		기본	-	-
		가중	-	-
		합계	1	6.0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감경	4	7.5
		기본	16	8.0
		가중	3	13.3
		합계	23	8.6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감경	-	-
		기본	-	-
		가중	1	12.0
		합계	1	12.0

단위 : 명, 월

구 분	유 형	영 역	2012년 9월 ~ 12월	
			수	평 균
	전체	감경	5	7.2
		기본	16	8.0
		가중	4	13.0
		합계	25	8.6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감경	-	-
		기본	2	5.0
		가중	4	7.5
		합계	6	6.7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감경	-	-
		기본	-	-
		가중	1	12.0
		합계	1	12.0
	전체	감경	-	-
		기본	-	-
		가중	1	12.0
		합계	1	12.0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감경	-	-
		기본	-	-
		가중	2	7.0
		합계	2	7.0
	전체	감경	-	-
		기본	-	-
		가중	2	7.0
		합계	2	7.0

선거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의 형량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2) 벌금형 사건

선거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유형 및 영역별 평균벌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천원

구 분	유 형	영 역	2012년 9월 ~ 12월	
			수	평 균
매수 및 이해유도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감경	5	1,640.0
		기본	-	-
		가중	-	-
		합계	5	1,6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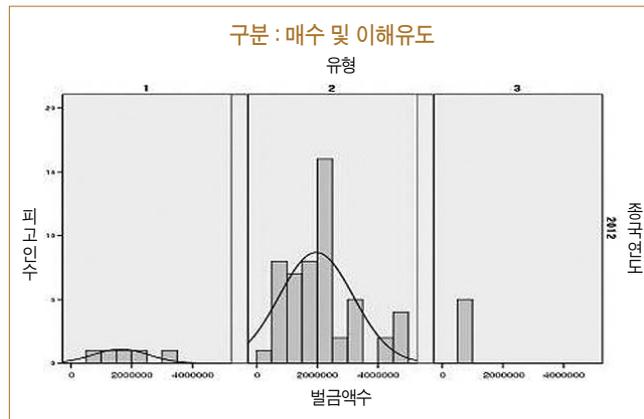
단위 : 명,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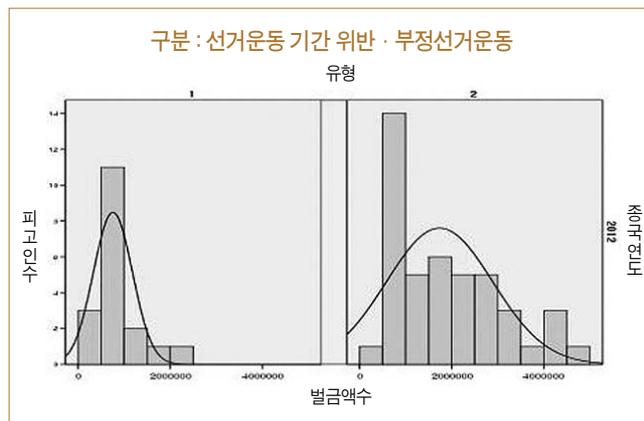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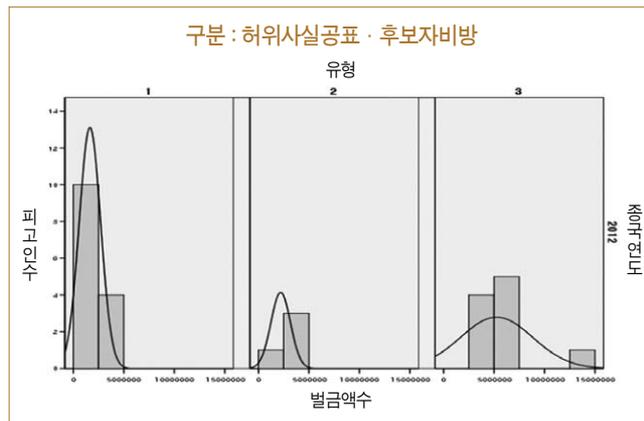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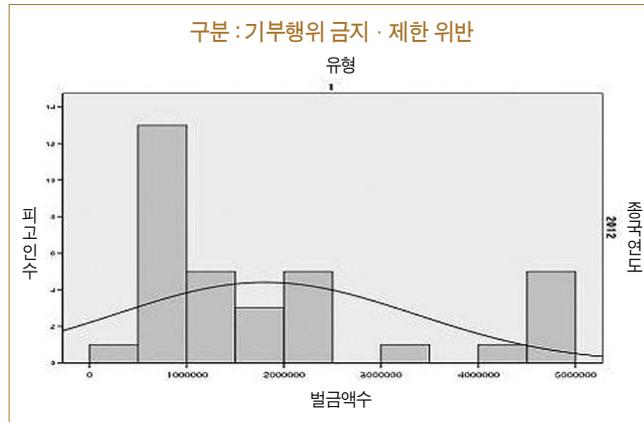
구 분	유 형	영 역	2012년 9월 ~ 12월	
			수	평 균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외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감경	52	1,963.5
		기본	1	2,000.0
		가중	-	-
		합계	53	1,964.2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감경	5	800.0
		기본	-	-
		가중	-	-
		합계	5	800.0
	전체	감경	62	1,843.5
		기본	1	2,000.0
		가중	-	-
		합계	63	1,846.0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감경	15	1,066.7	
	기본	18	2,250.0	
	가중	1	5,000.0	
	합계	34	1,808.8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1유형 (후보자비방)	감경	3	500.0
		기본	4	1,000.0
		가중	7	2,500.0
		합계	14	1,642.9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감경	1	800.0
		기본	3	2,666.7
		가중	-	-
		합계	4	2,200.0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감경	3	3,333.3
		기본	4	5,000.0
		가중	3	7,500.0
		합계	10	5,250.0

단위 : 명, 천원

구 분	유 형	영 역	2012년 9월 ~ 12월	
			수	평 균
	전체	감경	7	1,757.1
		기본	11	2,909.1
		가중	10	4,000.0
		합계	28	3,010.7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감경	9	488.9
		기본	7	885.7
		가중	2	1,500.0
		합계	18	755.6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감경	3	500.0
		기본	24	1,383.3
		가중	17	2,452.9
		합계	44	1,736.4
	전체	감경	12	491.7
		기본	31	1,271.0
		가중	19	2,352.6
		합계	62	1,451.6

선거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중 벌금형 선고 사건 전체(단일범, 동종경합범, 이종경합범)의 벌금액분포를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보았다.





제12장 외국 양형위원회 등과의 교류

I 영국 양형위원회 및 독일 연방대법원 등 방문

1 개요

양형위원회는 2008. 11. 제1기 양형위원회 김석수 위원장의 미국 공식 방문을 시작으로 미국 양형위원회 등 외국 양형위원회 및 사법기관과의 교류를 시작하였고, 2012년도에는 영국 양형위원회 및 대륙법계 국가로서 양형심리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독일 연방대법원 등을 방문하였다.

양형기준제의 선도국인 미국 외에 양형기준제를 도입한 영국 양형위원회를 방문하여 양형기준제도 시행 현황 및 경과를 파악하고 양형기준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양국의 양형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대륙법계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연방대법원 등을 방문하여 독일 법원의 양형심리절차에 관한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독일에서의 양형기준제도 도입 논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나아가 양형위원회는 한국 양형위원회의 현황, 한국 양형기준제도의 특징 및 적용방법, 시행 성과 등을 알리고, 영문 양형기준 책자를 전달하는 등 우리 양형기준제도를 적극 홍보하였다.

2 방문 내역

가. 방문단

- ▶ 양형위원회 위원장
- ▶ 여상훈, 하태훈 양형위원
- ▶ 운영지원단장

나. 방문기간

- ▶ 2012. 6. 30.(토) ~ 7. 8.(일)

다. 방문국가 및 지역

- ▶ 영국(런던)
- ▶ 독일(베를린, 칼스루에)

라. 방문기관

- ▶ 영국 양형위원회(Sentencing Council for England and Wales)
 - 소재지 : East Block, Room EB16 The Strand London WC2A 2LL UK
- ▶ 런던 소재 중앙형사법원(Central Criminal Court)
 - 소재지 : Old Bailey London EC4M 7EH UK
- ▶ 독일 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 소재지 : Mohrenstrasse 37 10117 Berlin Germany
- ▶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BGH)
 - 소재지 : Herrenstraße 45a 76133 Karlsruhe Germany
- ▶ 칼스루에 소재 지방법원(Landgericht Karlsruhe)
 - 소재지 : Schlossplatz 23 76131 Karlsruhe Germany

3 방문 경과

가. 영국 양형위원회

- ▶ 면담자
 - Vanessa Watling - Policy Advisor
 - Ameer Rasheed - Legal Advisor
- ▶ 토론 내용
 - 양형위원회의 설립 배경 및 독립성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절차
 - 양형위원회 회의 진행 및 의결 방식
 - 국회 등 타 기관과의 관계
 - 양형기준 적용 효과의 분석 및 운영 점검
 - 양형기준 준수율
 -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

- 미국 양형기준제도와와의 비교

나. 런던 소재 중앙형사법원

▶ 면담자

- Judge Peter Beaumont - Chair

▶ 토론 내용

- 중앙형사법원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설명

- 영국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의견

- 양형위원회의 독립성 및 타 기관과의 관계

- 배심원의 양형절차 관여 여부

- 양형기준 준수에 대한 입장

▶ 법정 방청

- 피고인이 17세 소년인 살인사건 공판절차 방청

다. 독일 연방법무부

▶ 면담자

- Mrs. Graf-Schlicker - Head of the Directorate-General Judicial System(전직 법원장)

- Oliver Sabel - 일반사법제도 담당국 소속 과장(전직 법관)

- Dr. Bernd Bösert - 형사실체법 담당국 소속 직원

▶ 토론 내용

- 연방 법무부의 인적 구성

- 독일에서의 양형기준제도 도입 논의

- 법관의 양형 결과에 대한 사회적 태도

- 양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상급심의 양형 통제

- 독일의 심급제도 및 참심원과 양형

- 미국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입장

- 독일 법원의 양형심리 절차

라. 독일 연방대법원

▶ 면담자

- Mr. Armin Nack - 형사1부 재판장(Vorsitzender)
- Mrs. Yvonne Ott - 형사2부 배석법관(Beisitzende Richter)

▶ 토론 내용

- 연방 대법원의 구성 및 업무 분장
- 독일의 민사사건 허가상고제도
- 판결문과 양형이유의 기재 여부
- 독일의 양형심리절차
- 독일에서의 양형기준제도 도입 논의
- 법관의 양형 결과에 대한 사회적 태도
- 양형에 있어서의 참심원과 법관의 관계
- 미국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입장

마. 칼스루에 소재 지방법원

▶ 면담자

- Mr. Alexander Riede 법원장
- Mr. Leonard Schmidt 부장판사
- Mr. Marc Wagner : 판사

▶ 토론 내용

- 독일 지방법원의 사무분장 및 업무량
- 칼스루에 지방법원의 주요 개선사항
- 법관의 양형 결과에 대한 사회적 태도
- 참심재판부의 양형절차 및 문제점



| 영국 양형위원회 방문(2012. 7. 2.) |



| 독일 연방대법원 방문(2012. 7. 5.) |